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구개발계획 수립 절차, 입주절차 간소화, 위탁관리 유연화 등 특구법 개정완료('21.06.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동시에 그 간 정책 연구용역, 관련 정책 시행, 특구 운영 등을 통해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규제 합리화 및 특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 분류 현행화(안 제5조)

“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분류와 일부 상이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함”

나. 특구육성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안 제7조)

“특구육성종합계획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나, 추진 실적 등을 점검하는 체계가 없어 실행력 미비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매년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여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함.”

다. 특구개발계획 수립제안·요청 절차 및 고시규정 정비(안 제7조의2)

1) 법 개정에 따라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권(사업시행자) 및 요청권(시·도지사)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요청 절차 및 관계서류 등 신설함.

2) 법에서는 특구 지정·변경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 상 특구 지정·변경과 특구개발계획을 동시에 고시하도록 되어있어 운영상 혼선이 있어 시행령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개발계획 수립기간 3년을 보장하고자 함.

라. 연구소기업 설립 지분을 일원화 및 최저기준 완화(안 제13조, 제14조의2)

“연구소기업 설립시 공공연구기관 등의 지분을 기준을 자본금에 따라 10~20%로 차등 적용하던 것을 10%로 일원화하고, 기술개발 등 투자를 위해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 최소 지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완화하고자 함.”

마. 특구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안 제28조)

“특구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가하여 관련 계획 변경 시 그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고자 함.”

바. 토지용도구역 세분에 ‘산업공공시설구역’ 신설(안 제29조)

“특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에 대응되는 토지용도구역이 없어 특구 관리에 혼선이 발생하므로, 산업공공시설구역을 신설하여 특구 내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사. 토지용도구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범위 확대(안 제30조, 별표)

1) 특구 내 토지용도구역별 건축물 허용용도가 국토계획법에 비해 과다하게 제한되어 있어 민원발생 및 복합적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 법 또는 타 법에 따라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토록 조항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상대적으로 특구 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주거·상업·녹지구역의 허용 건축물은 국토계획법을 준용하되 일부 유해용도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토록 함.

3) 특구의 핵심기능이 밀집된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서는 교육·연구기관과 기술사업화 기업의 복합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주체를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구진흥재단에서 대학,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

아.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입주, 양도절차 변경(안 제32조~36조)

“법 개정예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입주승인, 양도승인을 받던 사항을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함.”

자. 산업시설구역 관리 관련규정 정비(안 제36조의2)

1) 법 개정예 따라 특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따로 정하도록 함

2)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규정함.

3)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규정함.

차. 업무의 위탁 범위 정비(안 제42조)

“법 개정예 따라 승인서 접수·검토 등 위탁업무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등을 통해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2제4항”을 “법 제6조의2제6항”으로, “경우”를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와 주요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규모의 5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법 제6조의2제5항”을 “법 제6조의2제7항”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개발계획요청서에 검토의견서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특구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특구개발계획 수립요청 여부를 제안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제13조제5항 각 호의 구분”을 “제13조제5항”으로, “투자”를 “등 투자”로, “10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1항 단서”를 “법 제34조제2항 단서”로, “경우를”을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7조의2제2항”을 “제7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경우”를 “경우(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발사업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해당 내용을 특구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시설용지”를 “산업시설”로 한다.

라. 산업공공시설구역 : 산업시설구역의 연구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지역.

제3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산업공공시설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실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물 허용용도에 대한 계획이 따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다.

제32조의 제목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승인 요건)”을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입주승인 신청 등)”을 “(입주계약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승인을 받으려”를 “입주계약을 하려”로, “입주승인신청서”를 “입주계약신청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관리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관리기관”으로, “입주승인 신청을”을 “입주계약 신청을”로, “입주승인 신청인”을 “입주계약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입주승인을 받을”을 “입주계약을 체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관리기관”으로, “변경을 승인”을 “사유로 변경계약을 체결”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양도승인신청서”를 “양도신고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관리기관에”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입주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기간산업의 특례)”를 “(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업의 특례)”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입주승인 취소 후 남은 업무의 처리)”를 “(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입주승인 취소”를 “입주계약 해지”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진흥재단은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특구 지정 당시 관리기관이 있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

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5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6 제4호 중 “제32조제2호부터”를 “제32조제1호부터”로 하고, 제7호 중 “진흥재단에서”를 “진흥재단 또는 제3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로, “지식산업센터”를 “지식산업센터(분양 등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중 “승인을 얻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용주거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일반주거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1항제2호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도시형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3]

준주거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1항제3호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의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표 4]

상업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1항제4호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진화투표소,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소, 무도장 및 무도학원

[별표 5]

농지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1항제5호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도시형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①·② (생략)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기관과 해당 지역의 관할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	2. ----- -----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② (생략)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등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u>
제7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생략)	제7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② 법 제6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 면적 또는 토지
이용계획 용도별 면적의 10퍼
센트 미만을 변경하거나 3만
제곱미터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계획요청서에 검토의견서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 4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특구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특구개발계획 수립 요청 여부를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6조의2제6항 -----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

1. -----

-----경우
와 주요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2. 주요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규모의 5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3. ~ 5.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확정된 특구개발계획의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4조제7항(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고시와 동시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연구소기업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20퍼센트 2. 연구소기업의 자본금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규모의 5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삭제> 3. ~ 5. (현행과 같음) ⑤ ----- <u>법 제6조의2제7항</u>----- ----- <u>고시해야</u> -----. <후단 삭제>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u>15퍼센트</u> 3. 연구소기업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10퍼센트 ⑥ (생략) 제14조의2(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u>제13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u>(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u>10퍼센트</u>)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③ (생략) 제28조(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u>를 말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① ----- ----- ----- ----- ----- ----- <u>제13조제5항</u>----- ----- <u>등 투자</u>----- ---- <u>5퍼센트</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u>법 제34조제2항 단서</u>----- ----- ----- ----- ----- ----- <u>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u>
---	---	---	---

1. ~ 4. (생략)	를 ----.
5.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특구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 ~ 4. (현행과 같음)
6.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제7조의2제4항----- ----- ----- -----
<신설>	6. ----- ----- -----경우(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포함한다)
제29조(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눌 수 있다.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해당 내용을 특구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1. (생략)	제29조(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① ----- ----- ----- ----- -----
2. 산업시설구역	2.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설>	라. 산업공공시설구역 : 산업시설구역의 연구 및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 복합구역의 경우 총 면적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 ----- ----- 산업시설----- ----- -----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①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산업공공시설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실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

제36조(입주승인 취소 후 남은 업무의 처리)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6조(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 -----.
1. 입주승인 취소에 따른 부지 · 시설 또는 건축물등의 양도에 관한 업무	1. 입주계약 해지-----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별) ①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구 지정 당시 관리기관이 있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역을 말한다.	제36조의2(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별) ① 진흥재단은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특구 지정 당시 관리

	기관이 있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신 설>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제42조(업무의 위탁)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7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입주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삭 제>
4.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등양도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 락 처	(044) 202 - 4744